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94 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이달희·주호영·강대식

김정재 · 임종득 · 김상훈

윤재옥 • 우재준 • 최은석
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 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

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을 추가하면서,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 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49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한다.

18.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지방채 발행의 제한)	제11조의2(지방채 발행의 제한)
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	
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	
발행할 수 없다.	
1. 「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	<u><삭 제></u>
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	
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	
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	
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	
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」	
2. 「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	<u><삭 제></u>
대회 지원법」	
3.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	<u><삭 제></u>
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	
에 관한 특별법」	
<u>4.</u> ~ <u>20.</u> (생 략)	<u>1.</u> ~ <u>17.</u> (현행 제4호부터 제2
	()호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18.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
	을 위한 특별법_
21. 「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	<u><삭 제></u>
대회 지원법」	